

NEWSLETTER 657

May 06, 202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78호)

관세청은 2022년 5월 3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5월 2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조문 정비

- 담보 제공 없이 일괄 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도 제정(2019.7.1.)

2.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환급신청 편의 제고

-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3.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제25조2항) • 1항(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 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제25조2항) • < 삭 제 >

2.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input type="checkbox"/>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input type="checkbox"/>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상 동 〉
<input type="checkbox"/>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제 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상 동 〉

3.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⑮번 항목(간이환급)에 “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 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제36조) <p>----- -----다음 -----</p> <p>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신 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신 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4.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

- 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없이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 삭제

III. 시행일자(예정)

- 2022. 5. 25. (수)

IV.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 김다사롬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 2022. 05. 23.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

○ (전자우편) dasarom@korea.kr, jann@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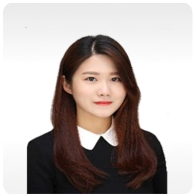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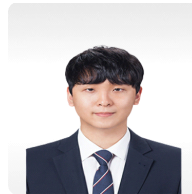
| Contact



서경은 관세사

T 02-6011-3033

E keso@esein.co.kr



유호성 팀장

T 070-4353-1522

E hsyoun@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